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5호 2020. 2. 3.(월)

조 례

-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조례 ----- 2
-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4
-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 9
-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 ----- 13
-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17
-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21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6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8

공 고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36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 56

회람							
----	--	--	--	--	--	--	--

제35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31호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6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시장은 목포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32호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목포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목포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목포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목포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3호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통합센터”란 청년들과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소통·교류,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의 구직알선,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이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업무 수행과 청년의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지원기준 및 방법, 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기능)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7.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8.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9.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10.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창업,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34호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목포시”로,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목포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환경보전대책”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을 “(환경보전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 중 “환경영향”을 “지역 환경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목포시(이하 "시"라 한다)</u> 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u>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 등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u>목포시</u> ----- ----- <u>목포</u> <u>시장</u> ----- ----- ----- ----- -.
제2조 (기본이념) ① <u>시</u> 의 환경정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u>목포시(이하 "시"라 한다)</u> 의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u>기타</u>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 <u>등</u> ----- ----- ----- -----.

4의2. ~ 7. (생 략)

제4조 (기본적 책무)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보전계획) ① ~ ⑤ (생 략)

제8조의2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20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3. (생 략)

<신 설>

4의2. ~ 7. (현행과 같음)

제4조 (기본적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환

경보전계획-----

제6조 (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 환경영향 -----

3. (현행과 같음)

4.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

4. (생 략)

행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5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35호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 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련번호, 이용마을 및 이용기간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장이 확정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고령자로 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이 결정한 기준 요금을 초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간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일련번호 및 배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복제를 통한 부당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 주민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 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보고 및 비용신청) ① 관할 동장은 시장이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교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택시 이용 영수증 및 이용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장의 교부결과 보고자료와 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원신청서와 영수증 및 100원 택시 이용권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 대표자에게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36호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목포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

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지역업체의 의무) ① 지역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 및 건설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우선사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우수 건설인 선정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제8조(적용배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우수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건설인 선정을 취소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우수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등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고시 제 2020-4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3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7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의 폐지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마인계터로15번길 20-2	2020.02.03	건물 멸실
2	전라남도 목포시 삼일로28번길 3	2020.02.03	건물 멸실

목포시 고시 제 2020-3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3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임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7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의 폐지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71-2	2020.02.03	건물 멸실
2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진길9번길 1	2020.02.03	건물 멸실
3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진길9번길 1-1	2020.02.03	건물 멸실
4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진길9번길 3	2020.02.03	건물 멸실
5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진길9번길 3-1	2020.02.03	건물 멸실
6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진길9번길 7	2020.02.03	건물 멸실
7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진길9번길 10	2020.02.03	건물 멸실
8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36번길 14	2020.02.03	건물 멸실
9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3	2020.02.03	건물 멸실
10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5	2020.02.03	건물 멸실
11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5-1	2020.02.03	건물 멸실
12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5-2	2020.02.03	건물 멸실
13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7-7	2020.02.03	건물 멸실
14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7-8	2020.02.03	건물 멸실

목포시 공고 제2020-147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3.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와 목포시 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제23조)

구 분	현 행	개 정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15일
30년 이상	15일	20일

-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 (별표 3)

구 분	현 행	개 정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3일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5. 관련부서 의견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0. 2. 3. ~ 2. 24.(21 일간)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24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0580), 직접방문 등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061-270-8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회”를 “4회”로, “있다.(단,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일 (분할 불가)”를 “10일 (2회 분할 가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일 (2회)”를 “15일 (3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5일 (3회)”를 “20일 (4회)”로 한다.

별표 3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일수란 및 같은 표 일수란 중 “2”를 각각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⑬ ----- ----- ----- ----- ----- ----- ----- 4회 ----- ---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분할 불가)	1. ----- 10일 (2회 분할 가능)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회 분할 가능)	2. ----- 15일 (3회 -----
3. 30년 이상 : 15일 (3회 분할 가능)	3. ----- 20일 (4회 -----
⑭ · ⑮ (생략)	⑭ · ⑮ (현행과 같음)

[별표 3] 개정 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개정 후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목포시 공고 제 2020 - 123 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3.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 「지방세기본법」에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2020. 3. 2 시행)**됨에 따라 신청서등 서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 변경 (안 제6조)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로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서식 규정조항 신설 (안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서 서식 규정조항 신설 (안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서 서식 규정조항 신설 (안 제14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제58조,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20. 2. 3. ~ 2020. 2. 24. (21일)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목포시 시군세 기본조례」”를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정사유”를 “변경사유”로, “(경정)”을 “(변경)”으로, “부과취소·경정처분”을 “부과취소·변경처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 ~ 제1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변경)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변경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변경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변경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지방세 부과최소 · 변경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변경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변경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목포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기 관 명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목포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목포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목포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생략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생략)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

1. (현행과 같음)

2. 한국거래소-----

--

3. 한국거래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목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u>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u>
--	--

현 행

■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 정 안

■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재				

부과취소(변경)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변경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변경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변경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illegible]

<신 설>

현행

개정안

■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본,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본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목포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목포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신청(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설>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11호서식]

기 관 명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 충족)의 사유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목포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목포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목포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목포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목포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생략

현행

개정안

<신 설>

■ [별지 제12호서식]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 일	지정 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붙임 2**관련법령****[지방세 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居所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목포시 공고 제 2020 - 121 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3.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에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2020. 3. 2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안 제8조) 신설
-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9조) 신설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10조) 신설

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주요내용

○ 도입배경

-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
-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구 분	내 용	
위촉대상	■ 세무경력 5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신청 및 지정절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 & 시행령요건 ** 1천만원이상&1년이상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대리인 위촉·관리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시도지사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8.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9. 예산사항 : 필요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반영

- 선정대리인 수당 지급

10. 입법예고 : 2020. 2. 3. ~ 2020. 2. 24. (21일)

12.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3.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차량등록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 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

<신 설>

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
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
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
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
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 2**관련법령****[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居所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